## 인쇄하기

인쇄하기

## 해남군 노숙인 보호요령

[시행 2012.12.15.]

제정) 2012.12.15 훈령 제3 94호

**관리책임부서** : 주민복지과

연락처 : 530-5316

## 2. 방 침

가. 연고자가 확인되거나 일정한 주거가 가능한 노숙인은 발견즉시 또는 일시 보호후 귀가토록 지원

나.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어 일정한 주거가 불가능한 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임시수용하여 동사 및 아사등 사고예방 조치를 취한 후 노숙인등의 복지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보호

3. 처리절차

가. 군 관내에서 발견된 노숙인에 대하여 읍면장은 경찰서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한다.

나. 조사결과 연고자가 확인되거나 일정한 주거나 귀가가 가능한 노숙인은 다음과 같이 귀가 조치 한다.

- 1) 근무시간내에 발생한 노숙인으로써 당일 귀가 조치가 가능한 노숙인에 대하여는 노숙인 귀가 여비 지급대장(별지 1호서식)에 등재하고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여 즉시 귀가 조치 한다.
- 2) 야간에 발생한 노숙인은 숙박시설에 위탁보호 한 후 익일 전항에 의거 귀가 여비를 지급하여 귀가 시킨다.
  - 3) 숙박시설에 위탁보호한 숙박경비는 위탁보호자에게 지급한다.
  - 4) 예산지원
    - •지원기준 : 읍면별 노숙인 발생 추세를 판단 일상경비 교부
    - 예산과목 : 일반보상금(사회보장적 수혜금)
- 다.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연고자가 보호를 거부하여 일정한 주거가 불가능 한 노숙인은 다음에 의거 노숙인 시설에 보호조치 한다.
- 1) 주간에 발생하여 당일에 시설입소가 가능한 노숙인은 즉시 군수에게 노숙인시설 보호 요청한 후 군수의 지시에 따른다.(별지 2호 서식)
- 2) 공휴일 및 야간에 발견된 노숙인은 일숙직 공무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직접 노숙인 시설에 일시보호토록 인계하고 사회복지시설 인수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읍면장에게 보고하며 읍면장은 익일 오전중으로 군수에게 노숙인 시설보호 요청을 한다.(별지 제3호서식)
  - 3) 노숙인별 입소시설은 다음과 같다.

구분 : 입소대상

: 보호시설명